

新 定 款  
(2018. 1. 4. 교육청허가)

# 定 款

財團法人 井邑市民獎學財團

# 財團法人 井邑市民獎學財團 定款

## 第 1 章 總 則

제1조(목적) 이 법인은 “ 사회일반의 이익 ” 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관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학 상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장차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정읍시 충정로 234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3. 기타 장학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정읍장학숙 입사비, 월사용료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

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정읍시 관내의 학생 또는 학교로 한다.

## 第 2 章 財 産 및 會 計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출연금, 기탁금,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1월1일~12월31일)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후원회) ① 이 법인의 장학기금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후원회장은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第 3 章 任 員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 사 10인
4. 감 사 2인

제18조(수석이사 및 간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수석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석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③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 ③ 다음 각 호의 직책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취임한다.
1. 이사 2인 :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
  2. 감사 1인 : 정읍시 감사과장
-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9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

하며(수석이사에 위임한 사항은 제외)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第 4 章 理 事 會

**제26조(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第 5 章 補 則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정읍시에 귀속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4. 매 회계년도의 결산사항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職 位	姓 名	住 所	任 期	備 考
이 사 장	국승록	정읍 연지동 252-5	4	
부이사장	박재복	정읍 이평면 두지리 90	※ 2	
부이사장	조광영	정읍 시기동 406-6	4	
수석이사	손주표	정읍 수성동 성진하이츠빌라 201호	4	
일반이사	김병태	정읍 신대인읍 132-127	4	
“	정남룡	전주 금암동 533-34	4	
“	차금화	정읍 공평동 110-1	4	
“	김동필	정읍 수성동 611	※ 2	
“	이계홍	정읍 입암면 천원리 70	※ 2	
“	강미재	정읍 장명동 166-1	4	
“	유봉순	정읍 소성면 신천리 73	4	
“	김재덕	정읍 수성동 579-6	※ 2	
“	김택술	정읍 시기 현대@ 101/606	※ 2	
“	최인규	정읍 신대인읍 132-58	4	
“	정남열	정읍 소성면 고교리 128	※ 2	
감사(당연)	심민섭	정읍 연지동 27	2	
일반감사	이원재	정읍 태인면 태흥리 423	※ 1	

※ 최초임원정수의 반수임기를 1/2로 정함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3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3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6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3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11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목록 1

## 設立當時 基本財産 目錄

### 1. 基本財産 總括表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건	300,000,000	

### 2. 基本財産 細部 目錄表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평 가 액	비고
현 금					300,000,000	정기 예금

별지목록 2

現在の 基本財産 目録

1. 基本財産 總括表

(2017. 12. 14.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단위 : 원)	비 고
현 금	1건	2,157,362,260	
부동산 (토 지)	1건	4,538,661,800	중개수수료:29,0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8,885,800원 기타부대비용(인지,수수료등) :776,000원 포함 (수수료총액:38,661,800원)
부동산 (건 물)	1건	5,277,094,473	등기 2016.10.13.
계		11,973,118,533	

2. 基本財産 細部 目録表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단위 : 원)	비 고
현 금	1건	2,157,362,260	증액 157,362,260 (채권상환액 원금)
부동산 (토 지)	1건 (대지면적 1,558㎡)	4,538,661,8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2-12번지
부동산 (건 물)	1건 (연면적 3,997㎡)	5,277,094,47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
계		11,973,118,533	